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비표)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령 제8호, 2014.12.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 2011.10.17></p> <p>「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 2005.8.4, 2012.7.23></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p> <p>「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8.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외국정부기관</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p> <p>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p> <p>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가기관</p> <p>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p> <p>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p> <p>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p> <p>나. 지방자치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전문개정 2013.8.6]</p>	<p>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p> <p>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p> <p>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p>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p>	<p>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8.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p> <p>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p> <p>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p> <p>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p> <p>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p> <p>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p>		
<p>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전문개정 2014.5.28]</p>	
<p>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p>		
<p>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p>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13.12.31></p> <p>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2014.11.27></p> <p>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국회 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국회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2007.7.3></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p> <p>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p> <p>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p> <p>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p> <p>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p> <p>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p> <p>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所在) 안내</p> <p>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p>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③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④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p>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p> <p>③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p> <p>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p>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p> <p>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보낼 수 있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p> <p>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p> <p>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 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개정 2005.3.10, 2007.7.31></p> <p>②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p> <p>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 정보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0, 2005.8.4, 2007.4.26, 2014.11.27></p> <p>②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③각급위원회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27></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 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에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 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4.20></p> <p>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③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p>	<p>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p>	<p>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 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 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p>	
<p>제3장 정보공개절차 〈개정 2013.8.6〉</p>		
<p>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p>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p> <p>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27]</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 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p>	<p>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p> <p>「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p> <p>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① 외교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p> <p>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p>	<p>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p>	<p>하기로 결정된 외교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난 후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回附)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再審議)한다. [전문개정 2012.8.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p>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p>	<p>「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p>	<p>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p> <p>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p>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p> <p>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p> <p>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p> <p>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p> <p>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p> <p>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4.9, 2013.11.1></p> <p>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p>	<p>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p> <p>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 청구를 한 경우</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4조(정보공개청구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p> <p>② 법 제10조제2항의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청구조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p> <p>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경우</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각급위원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⑤ 각급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로 처리하는</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⑥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p>[전문개정 2012.7.23]</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4조(정보공개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헌법재판소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p> <p>⑤ 사무처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p>⑦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p> <p>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p> <p>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p> <p>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p> <p>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p> <p>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p> <p>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p>[전문개정 2014.5.28]</p>	
	<p>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p> <p>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p>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3.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p> <p>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전문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p> <p>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p>	<p>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p>②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p> <p>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p> <p>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8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p>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p> <p>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개정 2014.11.27></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개정 2014.11.27></p> <p>「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p>[전문개정 2014.5.28]</p>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p> <p>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p> <p>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p> <p>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p> <p>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2013.11.1, 2013.12.31></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p> <p>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중앙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7></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p> <p>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p> <p>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한 경우</p> <p>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개정 2014.11.27></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심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p> <p>⑤ 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p> <p>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소속 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p>	<p>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p> <p>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p> <p>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p>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③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p> <p>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p> <p>②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p>③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p>④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9조(이의신청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 <p>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다.</p> <p>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2조(부분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4조(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6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p>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⑦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p> <p>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p> <p>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p> <p>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p> <p>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p> <p>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7></p> <p>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⑤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p> <p>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11.27></p> <p>⑦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⑧ 삭제 <2014.11.27></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p> <p>②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p>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 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p> <p>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p> <p>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p>[전문개정 2013.8.6]</p>		
	<p>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6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p>	<p>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p> <p>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⑦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p> <p>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p> <p>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p> <p><개정 2014.11.27></p> <p>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개정 2014.11.27></p> <p>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p> <p>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4.11.27></p> <p>⑦ 각급위원회는 제6항의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⑧ 삭제 <2014.11.27></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p> <p>②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11.1></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p> <p>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p> <p>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 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p> <p>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⑦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8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표와 같다.</p> <p>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p> <p>⑦ 사무처는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p>		
<p>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p>	<p>「국회정보공개규칙」 제17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p> <p>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p> <p>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p> <p>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p> <p>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p> <p>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p> <p>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p> <p>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11.27〉 2. 삭제 〈2014.11.27〉 3. 삭제 〈2014.11.27〉 4. 삭제 〈2014.11.27〉 <p>②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③ 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④ 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p> <p>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p> <p>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p> <p>②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11.1〉</p> <p>③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p>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9조(이의신청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p> <p>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p> <p>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p> <p>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다.</p> <p>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p> <p>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p> <p>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개정 2014.11.27〉</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p>	<p>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개정 2014.11.27></p> <p>「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소속 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p> <p>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각급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③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p> <p>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11.1〉</p> <p>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개정 2013.11.1〉</p> <p style="text-align: center;">「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때는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⑤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12.16]</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 <p>②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11.1〉</p> <p>③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p> <p>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개정 2014.1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11.27〉 2. 삭제 〈2014.11.27〉 3. 삭제 〈2014.11.27〉 4. 삭제 〈2014.11.27〉 <p>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p> <p>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19조(이의신청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p> <p>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⑤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다.</p> <p>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p> <p>「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p> <p>제20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p>	
	<p>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p>		
<p>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3.8.6]</p>	<p>제19조(심의·조정 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p>[전문개정 2014.5.28]</p>	
	<p>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개정 2011.10.17, 2013.3.23, 2014.11.19></p> <p>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4.11.19></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 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p> <p>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p> <p>[전문개정 2014.5.28]</p>	
<p>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p>	<p>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p>		
	<p>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p>	
<p>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8.6]</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26조(국회의 보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11.19></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14.5.28]</p>	
	<p>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정보공개규칙」</p> <p>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정보공개규칙」</p> <p>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p>	
<p>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3.8.6]</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p>	<p>「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p> <p>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외교문서를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외교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회신(回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외교부장관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결과 및 회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8.28]</p>
	<p>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p> <p>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p>	<p>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5.28]</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 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p> <p>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p> <p>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p> <p>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5.28]</p>	
	<p>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전문개정 2014.5.28]</p>	<p>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5.28]</p>